

#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이형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10. 19.

발의자 : 김동규·박영근·신성철·이민근·  
이형근·정승현·한갑수 의원(7인)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8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2012. 11. 2. ~ 2013. 04. 30 일까지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4년 12월 신설해안도로 및 주요 연결로 건설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 해안 노선으로 변경 또는 국도 39호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
- 송산그린시티 쪽 해안 노선의 사업계획은 경기도 '노선변경 타당하지 않음'과 한국수자원공사 '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항' 임을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받았음.
- 이후 2009년 2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차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년 8월 환경영향평가

주민설명회의 과정과 푸르지오7차, 9차 집단민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용역을 건설과에서 실시하여 신설해안도로를 미건설하고 해안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변경 요청을 2010년 7월 제출하였음.

- 2012년 2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 MTV단지에서 매송IC구간 신설해안도로가 폐지되었으며, 이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MTV 조성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**3. 관련법규**

#### **○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**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# **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**

-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